



## 2023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문

### □ 급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집중신청기간 : 2023. 11. 20.(월) ~ 2023. 12. 1.(금)**

- ① 방문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기존 남구 아동급식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청시 필요 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 1부
- 필요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월급명세서, 근로확인서 등 ( 위 자료는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위 자료는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1),(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2023. 11. 22.

동아여자고등학교장

<서식 1호>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 초 [ ] 중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 초 [ ] 중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식식 - 도시락만 가능 [ ] 학기 중 토공휴일 [ ] 방학 중	
	희망 급식 방법	[ ] 지역아동센터 이용 [ ] 일반음식점(급식카드)                  [ ] 도시락 배달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